

●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14.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춘곤 의원 대표발의(강석주 의원 등 41명 찬성)
- 나. 제안일 : 2023. 8. 14.
- 다. 회부일 : 2023. 8. 21.
- 라. 의안번호 : 104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2022.12.22.)
- 이에 지방의원 구금과 징계 시 월정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정함.

나. 주요내용

- 구금상태의 경우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함.(안 제6조제1항)
-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1/2로 감액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제2항)

-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함.(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구금과 출석정지 징계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립하고자 제안되었음.

2 구금된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안 제6조제1항)

- 안 제6조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2022. 12. 22)을 통해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제한을 권고한 것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¹⁾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의정활동비²⁾와 여비³⁾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 그동안 의정활동비나 여비와 달리 월정수당이 사실상 급여로 생활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⁴⁾에서 별도의 지급제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

1) 월정수당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월정수당(서울시의원, 410만원, 2023년 기준)

2)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및 조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서울시의원, 월 150만원, 2023년 기준)

3) 여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 및 조례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았으나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월정수당 지급제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다수의 지방의회가 월정수당 제한 조치를 정하고 있음⁵⁾.

- 변화된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지방의회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고려할 때 구급기간 동안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1/2로 감액(안 제6조제2항, 제3항)

- 안 제6조제2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 제한하고, 제3항은 무죄와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난 5월 청렴성 강화를 위해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출석정지 징계 기간 중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연구 활동 등은 유지되고, 형사구금 대비 의정비 지급제한 정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4) 국세청은 2006년 유권해석을 통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음

5) 강원('23.8.3.시행), 충북('23.5.12.시행) 충남('23.8.10.시행), 전북('23.6.16.), 전남('23.8.3.시행)

<표-3>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비 변화표

징계 구분	구금(제6조제1항)		출석정지(제6조제2항)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현행	전액 지급(규정x)	전액 지급 제한	전액 지급(규정x)	전액 지급 제한
개정안	전액 지급 제한	전액 지급 제한	1/2 지급 제한	1/2 지급 제한
비고	강화	현행 동일	강화	완화

※단, 징계처분 취소 혹은 무죄 확정 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소급 지급

* 2023년 의원 급여(월) : 5,601,240원(월정수당 4,101,240원 + 의정활동비 1,500,000원)

** 출석정지 징계기간 중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연구 활동 등은 유지되고, 형사구금 대비 의정비 지급제한 정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을 반영함.

- 참고로, 국회의원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 입법활동비 등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국회질서 유지 위반 등으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을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음6).

6)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90일)이 내의 출석정지.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2분의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2분의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지방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해왔던 관행을 개선해 주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출석정지 기간 동안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는 조치는 형사구금 대비 의정비 지급제한 정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붙임1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개선사항(요약)

1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행정안전부)

□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포함하여 갑질·성 비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출석정지 90일 이내'로 확대

□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새로운 징계수단 도입

- 지방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회의 출석이 금지되는 30일 이내 출석정지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 해소

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지방의회)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본회의·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공개회의 경고·사과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3**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지방의회)****□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 공소제기(기소) 이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전액 미지급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

※ (예시)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전액 미지급, 월정수당 〇% 이내 지급 등

붙임2 광역지방의회별 의정활동비 등 제한 현황

시·도의회	구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서울, 부산	구금	전액 제한	지급 (규정 無)	전액 제한
	출석정지 징계	전액 제한	지급 (규정 無)	전액 제한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제주	구금	전액 제한	지급 (규정 無)	전액 제한
	출석정지 징계	지급 (규정 無)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구금	전액 제한	지급 (규정 無)	지급 (규정 無)
	출석정지 징계	지급 (규정 無)		
강원	구금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출석정지 징계 (일반)	1/2 감액	1/2 감액	지급 (규정 無)
	출석정지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지급 (규정 無)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1/2 감액 (징계의결월 포함 2개월)	1/2 감액 (징계의결월 포함 2개월)	지급 (규정 無)

시·도의회	구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충북	구급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출석정지 징계 (일반)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지급 (규정 無)
	출석정지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지급 (규정 無)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1/2 감액 (징계의결월 포함 2개월)	1/2 감액 (징계 의결월 포함 2개월)	지급 (규정 無)
충남	구급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지급 (규정 無)
	출석정지 징계 (일반)	1/2 감액	1/2 감액	지급 (규정 無)
	출석정지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지급 (규정 無)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1/2 감액 (징계 의결월 포함 2개월)	1/2 감액 (징계 의결월 포함 2개월)	지급 (규정 無)
전북	구급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지급 (규정 無)

시·도의회	구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출석정지 징계 (일반)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지급 (규정 無)
	출석정지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지급 (규정 無)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2개월)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2개월)	지급 (규정 無)
전남	구금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전액 제한
	출석정지 징계 (일반)	1/2 감액	1/2 감액	1/2 감액
	출석정지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전액 제한 (징계의결월 포함 3개월)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질서유지 의무 위반)	1/2 감액 (징계 의결월 포함 2개월)	1/2 감액 (징계 의결월 포함 2개월)	7/12 감액 (징계 의결월 포함 2개월)